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30

발의연월일: 2024. 8. 29.

발 의 자:김남희·김동아·권칠승

김선민·백승아·김 윤

임광현 • 박희승 • 장종태

김한규 · 강선우 · 이연희

전진숙 • 박주민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·배포 및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있음.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·청소년의 2차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.

이에 사법경찰관리가 아동·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의2 신설).

주요내용

- 가. 사법경찰관리는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해당 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에서 게시·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성착 취물을 삭제 또는 접속차단 요청을 함(안 제38조의2제1항).
- 나. 사법경찰관리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루밍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 하여는 그루밍 행위의 금지 통보 및 처벌 경고를 함(안 제38조의 2제2항).
- 다.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·청소년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아동·청소년의 동의를 얻어 보호 시설이나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음(안 제38조의2제3항).

법률 제 호
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2(아동·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 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)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해당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·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게시판의 관리·운영자에게 해당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처리절차 및 처리결과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피해아동·청소년(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)에게 안내 및 통지를 하여야 한다.

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위반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,

- 그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.
- ③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아동·청소년이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아동·청소년을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피해아동·청소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38조의2(아동・청소년대상 디
	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
	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
	치)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
	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를
	받고 해당 아동·청소년성착취
	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
	시·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
	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
	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
	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
	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
	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
	제9호에 따른 게시판의 관리ㆍ
	<u>운영자에게 해당 아동·청소년</u>
	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접
	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
	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
	사법경찰관리는 아동・청소년
	성착취물의 삭제 또는 접속차
	단 등의 처리절차 및 처리결과
	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
	한 해당 피해아동·청소년(보

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 자를 포함한다)에게 안내 및 통지를 하여야 한다.

-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5조의2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 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 하여는 즉시 그 위반행위를 중 단할 것을 통보하고, 그 위반행 위를 중단하지 아니할 경우 처 벌반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 고하여야 한다.
- ③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아동·청소년이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아동·청소년을 제45조에 따른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. 이경우 그 피해아동·청소년의동의를 얻어야 한다.